

의안번호	2219854
의 퇴 인	엄태영의원
회 답 일	2026.9.9.
추계번호	26C3581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2조의4 신설(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과의 협력체 계 구축 등)	○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제1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정보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,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 신설)	재량규정
		○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 신설)	
		○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 신설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2조의4(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,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고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, 이를 시행하는 경우 정보화

사업비, 시스템 구축·유지·보수비, 용역비, 협의체 운영비 등의 추가재정
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□ 그러나 안 제52조의4에서 협력체계 구축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협력체계 구축·운
영 방법, 협력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, 관계 기관의 수,
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등이 불확정적이므로 현시
점에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
가 있음

○ 다만,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이 마약류를 포함하여 식품
(건강기능식품 등 포함), 의약품, 화장품,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부당광고
및 불법유통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, 마약류 온
라인 유통 방지만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예산
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 운영 예산 현황: 2022~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시스템	-	-	445	70	70
운영비	1,268	1,994	1,907	1,941	2,880
합계	1,268	1,994	2,352	2,011	2,950

자료: 식품의약품안전처

□ 따라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
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소임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소임	02-6788-4742	soimlee@assembly.go.kr